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알기쉬운 재외선거운동 안내

- ④ 이 자료는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주재국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④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한·금지될 수 있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④ 또한 대한민국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 사례라도 주재국의 법에 따라 제한·금지된 행위는 그 주재국의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이 자료에 의하여도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82-2-502-6516)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개요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공선법 §58, §59)

선거운동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2012. 11. 27.~12. 18) 중에만 할 수 있음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공선법 §58)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호별로 방문하거나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선법 §60, §218의4⑥)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외국인, 만 19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 단체의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 그 밖에 공선법 §60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재외선거운동 방법

1.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공선법 §59, §82의4, §218의14)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함

방법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은 불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및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행위 및 말(언어)로 하는 행위
 - ※ 다만, 현지시간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할 수 없음
 - ※ 국외선거운동방법 제한 이유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선거과열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분열 방지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공선법 §70, §71, §82의7, §218의14)

- 선거운동기간 중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 재외선거권자는 위 '방송광고·방송연설 및 인터넷광고'는 할 수 없음



단체의 선거운동

1.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선법 §218의4⑦)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공명선거 추진활동 (공선법 §10)

-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음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

공명선거 추진활동이 금지되는 단체 (예시)

-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나 개인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나 재외국민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인쇄물·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제공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홍보물 등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게 하는 행위



재외국민 ·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

1.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공선법 § 218의30)

제한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요청 · 제한방법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제한대상자의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함

제한 기간

제한받은 날부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공선법 § 218의31)

입국금지 대상자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통보

입국금지 기간

입국금지 결정일부터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1.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기부행위 개념

기부행위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기부행위 제한기간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② 재외선거인등 등록신청·신고 또는 재외투표를 위해 버스 등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이 그 소요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투표를 하게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하여 금전·물품·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③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에게 고국방문 또는 여행경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④ 누구든지 각종행사에서 후보자 명이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⑤ 정당·후보자·제3자가 단체 등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되는 기부행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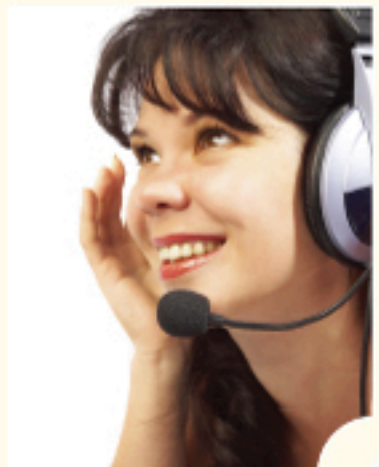
2. 인쇄물 · 시설물 및 언론이용

Yes 할 수 있는 사례

-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없는 연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 재외국민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의 직책·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시 배부하거나 교회·식당 등에 비치·배부하는 행위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 ➡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 ➡ 각종 안내장 등에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 한인신문·한인회보 등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업적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 ※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외국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



3.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모금·기부

Yes

할 수 있는 사례

- ④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
- ④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④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 ④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④ 재외국민이 한인신문 등에 정당의 정강·정책을 광고하는 행위
- ④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음
- ④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 ④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④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인이 연간 법정기부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행위

4. 모임·행사 및 팬클럽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 ➡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 (지지·반대·선전내용은 불가)을 게시하는 행위
-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각종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 ➡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①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 ② 불법선거운동을 묵인·방치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모면하더라도 여권반납, 입국금지 등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③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c.go.kr>

